|  |  |  |
| --- | --- | --- |
|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환경부 령 제17호《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을 2011년 3월 24일에 환경부 제 1 차 사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환경부 부장 周生賢2011년 4월 18일**제1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활동을 규범화하고 환경 비상사건에 대한 환경 주관부서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비상사건 대처 법》, 《국가 공중 비상사건 총체적 응급대처 예비방안》, 《국가 환경 비상사건 응급 예비방안》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환경 주관부서의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에 준용한다. 환경 비상사건은 특별중대사건(Ⅰ급), 중대사건(Ⅱ급), 대형사건(Ⅲ급), 일반사건(Ⅳ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핵 및 방사 환경 비상사건 정보의 보고는 핵안전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환경 비상사건 발생지역의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환경비상사건을 발견했거나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확인하고 비상사건의 성격과 등급을 초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차인정에서 일반사건(Ⅳ급)이나 대형사건(Ⅲ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4시간 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일차인정에서 중대사건(Ⅱ급)이나 특별중대사건(Ⅰ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4시간 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성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보고를 입수한 후 사건을 확인하고 1시간 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비상사건 조처과정에 사건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등급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잠시 등급을 밝힐 수 없는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중대(Ⅱ급)사건 또는 특별중대(Ⅰ급)사건 보고절차로 보고해야 한다. (1) 음료수 자원구역에 영향이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비상사건,(2) 주민 집거지역,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지역이나 민감 인구와 관련한 비상사건,(3) 중금속이나 금속류 오염 관련 비상사건,(4) 다성적 또는 다국적 영양이 가능한 비상사건, (5)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사건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이 큰 비상사건, (6) 지방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상사건. **제5조**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앞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지시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환경부에 환경 비상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부 환경 응급지휘지도소조 집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 응급지휘지도소조 집무실에서는 상황을 보아 부내 관련국에 관련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환경부에서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의 중대(Ⅱ급) 환경 비상사건이나 특별중대(Ⅰ급) 환경 비상사건 또는 보고해야 하는 기타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경우 즉시 국무원 총 당직실과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환경 비상사건이 이미 인접 행정구역에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 발생지역 환경 주관부서에서 즉시 인접지역 동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하여 인접지역 인민정부에 통보하게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 방법 제3조와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전화로 보고한 경우 정보를 받은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보고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메모하는 동시에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즉시 서면 정보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불명하고 불완전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즉시 확인하여 정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환경 비상사건 정보서류 보관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본 지역 환경 비상사건 월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년 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통계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는 보고상황과 통계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국가 비밀과 관련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서는 비밀관련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환경 비상사건 보고서는 시초보고서, 후속보고서, 처리결과 보고서로 나뉜다. 시초보고서는 환경 비상사건을 발견했거나 알게 된 후의 제1차로 제출하는 보고서이고 후속보고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사건의 진전 상황에 대해 수시로 하는 보고서이며 처리결과 보고서는 환경 비상사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제13조** 시초보고서에서는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시간, 지점, 정보의 내원, 사건의 발생원인과 성격, 기본과정, 주요 오염물과 수량, 측정데이터, 피해 자 상황, 음료수 수자원 등 환경 민감지대 영향상황, 사건의 발전추향, 처리상황, 취할 조치 및 다음 단계 작업에 대한 건의 등 초보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민감지대 분포도를 제공해야 한다. 후속보고에서는 시초보고를 토대로 하여 관련 처치 진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처리결과보고에서는 시초보고서와 후속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환경 비상사건을 처리한 조치와 과정, 결과를 보고하고 환경 비상사건에 잠재하는 또는 간접적인 위험과 손실, 사회에 미친 영향, 처치 후에 남은 문제, 책임추궁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는 팩스, 인터넷, 우편 대면 등 서면보고 형식을 취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시초보고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나 즉시 서면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서면보고서에는 보고단위, 보고담당자, 연락인과 연락방법 등을 밝혀야 하며 가능한 한 지도, 도면,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활동에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보고를 올리거나 사건을 은닉하거나 보고에 누락이 있는 경우 통보로 비판한다. 악과를 빚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과 규율에 의해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환경부에서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환경 행정주관부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시범)》(環發[2006] 제50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환경 비상사건 등급표준**비상사건의 심각성과 시한성에 따라 환경 비상사건을 특별중대(Ⅰ급)사건, 중대(Ⅱ급)사건, 대형(Ⅲ급)사건, 일반(Ⅳ급)사건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1. 특별중대(Ⅰ급) 환경 비상사건 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중대 환경 비상사건이다.(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중독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2) 환경오염으로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1억 위안 이상인 경우(4) 환경오염으로 지역 생태기능상실 또는 국가의 중점보호물종 멸종을 조성한 경우(5) 환경오염으로 지구 시급 이상 도시의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6) 제1류, 제2류 방사원의 통제실패로 대면적의 방사오염을 조성한 경우, 핵시설의 장외에 진입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엄중한 핵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의 방사후과가 인접성이나 경외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3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완 핵시설에서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4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변국가 핵시설에서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4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국경지역에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2. 중대급(Ⅱ급) 환경 비상사건 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급 환경 비상사건이다.(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 중독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2) 환경오염으로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2,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이하인 경우(4) 환경오염으로 지역 생태기능의 부분상실 또는 국가의 중점보호 야생 동식물의 대량사멸을 조성한 경우(5) 환경오염으로 현급 이상 도시의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6) 중금속오염이나 위험 화각물의 생산, 운수, 사용과정에 폭발,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험 폐기물의 포기, 방치, 분실, 유실 등으로 국가의 중점 강하천유역, 국가급 천연보호구, 풍경명승지, 주민 집거지,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지역에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7) 제1류, 제2류 방사원의 분실, 도난, 통제실패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거나 핵시설과 우라늄광물 제련시설에, 현장에 진입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표준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입화물의 방사가 표준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성(자치구, 직할시)경계를 넘어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3. 대형(Ⅲ급)사건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형 환경 비상사건이다.(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3명 이하이거나 중독자가 10명 이상, 50명이하인 경우(2) 환경오염으로 5,000명 이상, 1만 명 이하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5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4) 환경오염으로 국가의 중점보호 동식물 물종이 파괴를 받은 경우(5) 환경오염으로 향이나 진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6) 제3류 방사원의 분실, 도난 또는 통제실패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경우(7) 지구와 시의 경계를 넘어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4. 일반(Ⅳ급) 환경 비상사건특별중대 환경 비상사건, 중대 환경 비상사건, 대형 환경 비상사건을 제외한 환경 비상사건을 말한다.  |  |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环境保护部令第17号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已由环境保护部2011年第一次部务会议于2011年3月24日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5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部长 周生贤　 　 二○一一年四月十八日　　**第一条** 为了规范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工作，提高环境保护主管部门应对突发环境事件的能力，依据《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国家突发公共事件总体应急预案》、《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环境保护主管部门对突发环境事件的信息报告。　　突发环境事件分为特别重大（Ⅰ级）、重大（Ⅱ级）、较大（Ⅲ级）和一般（Ⅳ级）四级。　　核与辐射突发环境事件的信息报告按照核安全有关法律法规执行。　　**第三条** 突发环境事件发生地设区的市级或者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在发现或者得知突发环境事件信息后，应当立即进行核实，对突发环境事件的性质和类别做出初步认定。　　对初步认定为一般（IV级）或者较大（III级）突发环境事件的，事件发生地设区的市级或者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四小时内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 　　对初步认定为重大（II级）或者特别重大（I级）突发环境事件的，事件发生地设区的市级或者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两小时内向本级人民政府和省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同时上报环境保护部。省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进行核实并在一小时内报告环境保护部。　　突发环境事件处置过程中事件级别发生变化的，应当按照变化后的级别报告信息。　　**第四条** 发生下列一时无法判明等级的突发环境事件，事件发生地设区的市级或者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重大（II级）或者特别重大（I级）突发环境事件的报告程序上报： 　　（一）对饮用水水源保护区造成或者可能造成影响的；　　（二）涉及居民聚居区、学校、医院等敏感区域和敏感人群的；　　（三）涉及重金属或者类金属污染的；　　（四）有可能产生跨省或者跨国影响的；　　（五）因环境污染引发群体性事件，或者社会影响较大的；　　（六）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认为有必要报告的其他突发环境事件。　　**第五条** 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先于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获悉突发环境事件信息的，可以要求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核实并报告相应信息。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报告信息。　　**第六条** 向环境保护部报告突发环境事件有关信息的，应当报告总值班室，同时报告环境保护部环境应急指挥领导小组办公室。环境保护部环境应急指挥领导小组办公室应当根据情况向部内相关司局通报有关信息。　　**第七条** 环境保护部在接到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重大（II级）或者特别重大（I级）突发环境事件以及其他有必要报告的突发环境事件信息后，应当及时向国务院总值班室和中共中央办公厅秘书局报告。　　**第八条** 突发环境事件已经或者可能涉及相邻行政区域的，事件发生地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相邻区域同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并向本级人民政府提出向相邻区域人民政府通报的建议。接到通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调查了解情况，并按照本办法第三条、第四条的规定报告突发环境事件信息。　　**第九条** 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接到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以电话形式报告的突发环境事件信息后，应当如实、准确做好记录，并要求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及时报告书面信息。　　对于情况不够清楚、要素不全的突发环境事件信息，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要求下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及时核实补充信息。　　**第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突发环境事件信息档案，并按照有关规定向上一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报送本行政区域突发环境事件的月度、季度、半年度和年度报告以及统计情况。上一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定期对报告及统计情况进行通报。　　**第十一条** 报告涉及国家秘密的突发环境事件信息，应当遵守国家有关保密的规定。　　**第十二条** 突发环境事件的报告分为初报、续报和处理结果报告。　　初报在发现或者得知突发环境事件后首次上报；续报在查清有关基本情况、事件发展情况后随时上报；处理结果报告在突发环境事件处理完毕后上报。　　**第十三条** 初报应当报告突发环境事件的发生时间、地点、信息来源、事件起因和性质、基本过程、主要污染物和数量、监测数据、人员受害情况、饮用水水源地等环境敏感点受影响情况、事件发展趋势、处置情况、拟采取的措施以及下一步工作建议等初步情况，并提供可能受到突发环境事件影响的环境敏感点的分布示意图。　　续报应当在初报的基础上，报告有关处置进展情况。　　处理结果报告应当在初报和续报的基础上，报告处理突发环境事件的措施、过程和结果，突发环境事件潜在或者间接危害以及损失、社会影响、处理后的遗留问题、责任追究等详细情况。　　**第十四条** 突发环境事件信息应当采用传真、网络、邮寄和面呈等方式书面报告；情况紧急时，初报可通过电话报告，但应当及时补充书面报告。　　书面报告中应当载明突发环境事件报告单位、报告签发人、联系人及联系方式等内容，并尽可能提供地图、图片以及相关的多媒体资料。　　**第十五条** 在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工作中迟报、谎报、瞒报、漏报有关突发环境事件信息的，给予通报批评；造成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依纪给予处分；构成犯罪的，移送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六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解释。　　**第十七条** 本办法自2011年5月1日起施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试行）》（环发〔2006〕50号）同时废止。附录：**突发环境事件分级标准**　　按照突发事件严重性和紧急程度，突发环境事件分为特别重大（Ⅰ级）、重大（Ⅱ级）、较大（Ⅲ级）和一般（Ⅳ级）四级。　　1. 特别重大（Ⅰ级）突发环境事件。　　凡符合下列情形之一的，为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　　（1）因环境污染直接导致10人以上死亡或100人以上中毒的；　　（2）因环境污染需疏散、转移群众5万人以上的；　　（3）因环境污染造成直接经济损失1亿元以上的；　　（4）因环境污染造成区域生态功能丧失或国家重点保护物种灭绝的；　　（5）因环境污染造成地市级以上城市集中式饮用水水源地取水中断的；　　（6）1、2类放射源失控造成大范围严重辐射污染后果的；核设施发生需要进入场外应急的严重核事故，或事故辐射后果可能影响邻省和境外的，或按照“国际核事件分级（INES）标准”属于3级以上的核事件；台湾核设施中发生的按照“国际核事件分级（INES）标准”属于4级以上的核事故；周边国家核设施中发生的按照“国际核事件分级（INES）标准”属于4级以上的核事故；　　（7）跨国界突发环境事件。　　2. 重大（Ⅱ级）突发环境事件。　　凡符合下列情形之一的，为重大突发环境事件：　　（1）因环境污染直接导致3人以上10人以下死亡或50人以上100人以下中毒的；　　（2）因环境污染需疏散、转移群众1万人以上5万人以下的；　　（3）因环境污染造成直接经济损失2000万元以上1亿元以下的；　　（4）因环境污染造成区域生态功能部分丧失或国家重点保护野生动植物种群大批死亡的；　　（5）因环境污染造成县级城市集中式饮用水水源地取水中断的；　　（6）重金属污染或危险化学品生产、贮运、使用过程中发生爆炸、泄漏等事件，或因倾倒、堆放、丢弃、遗撒危险废物等造成的突发环境事件发生在国家重点流域、国家级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或居民聚集区、医院、学校等敏感区域的；　　（7）1、2类放射源丢失、被盗、失控造成环境影响，或核设施和铀矿冶炼设施发生的达到进入场区应急状态标准的，或进口货物严重辐射超标的事件；　　（8）跨省（区、市）界突发环境事件。　　3. 较大（Ⅲ级）突发环境事件。　　凡符合下列情形之一的，为较大突发环境事件：　　（1）因环境污染直接导致3人以下死亡或10人以上50人以下中毒的；　　（2）因环境污染需疏散、转移群众5000人以上1万人以下的；　　（3）因环境污染造成直接经济损失500万元以上2000万元以下的；　　（4）因环境污染造成国家重点保护的动植物物种受到破坏的；　　（5）因环境污染造成乡镇集中式饮用水水源地取水中断的；　　（6）3类放射源丢失、被盗或失控，造成环境影响的；　　（7）跨地市界突发环境事件。　　4. 一般（Ⅳ级）突发环境事件。　　除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重大突发环境事件、较大突发环境事件以外的突发环境事件。 |